

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

노동조합	조합명	대표자
	소재지	
사용자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

위의 자를 노동관계 당사자로 한 쟁의행위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2조제2항에서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호에 따라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관청

직인